

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통지서

- 상호(명칭) :
-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 :
- 성명(대표자) :
- 소재지(사업장) :
- 화학물질의 정보

화학물질명 (총칭명)		
고유번호 (CAS No. 등 화학물질 식 별번호)		
등록번호		
등록형태	[] 0.1톤 미만 [] 0.1톤 이상 ~ 1톤 미만 [] 1톤 이상 ~ 10톤 미만 [] 10톤 이상 ~ 100톤 미만 [] 100톤 이상 ~ 1000톤 미만 [] 1,000톤 이상 [] 고분자화합물 [] 현장분리중간체 [] 수송분리중간체	
화학물질의 용도	용도분류체계	
	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	
	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	

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직인